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6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등(김정호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6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3.

(3) 회 부 일 : 2025. 8.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등(김정호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정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제100조의32) ○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과세대상: - 미환류소득*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등) - 환류대상 ○ 세율: 20% ○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또는 투자제외형 중 선택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에 60% ~8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에 10%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과세대상: - (현행과 같음) ○ 세율: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투자포함형: (현행과 같음) -투자제외형: (현행과 같음)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과세대상: - (현행과 같음) ○ 세율: (현행과 같음) ○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또는 투자제외형 중 선택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에 60% ~8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 × 20%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에 10%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기업소득비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과세대상: - (현행과 같음) ○ 세율: (현행과 같음) ○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또는 투자제외형 중 선택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에 65% ~8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 × 20%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에 20%

현 행	김정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시행령: 15% ○ 환류 대상 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 등 <신 설>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적용기한: 2025. 12. 31.	○ 환류 대상 범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김정호의원안) 2030. 12. 31. (이만희의원안)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 × 20% ○ 환류 대상 범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 배당에 한정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 × 20% ○ 환류 대상 범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현 행	김정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 시행일: 공포한 날 (김정호의원안) 2026. 1. 1. (이만희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 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2025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미환류소 득 또는 초과환 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김정호의원안 2024. 7. 12. 발의(의안번호 1648), 박수민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74), 이만희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62), 정부안 2025. 9. 3. 발의(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환류대상
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
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이만희의원안은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안은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
환류소득 산정 시 고려하는 환류대상에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
는 것임.

정부안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고려하는 환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구간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201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했던 기업소득 환류세제¹⁾가 2018년부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환류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신설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하나로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2015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도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미환류소득을 산출할 때의 공제항목에서 배당 및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와 상생협력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여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음.

2017년 세법개정에서는 투자·상생협력을 위한 과세특례로 명칭을

1)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으로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여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을 가계 부문으로 환류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일반적인 조세특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변경하면서, 고용,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출연금 항목에 대한 환류가중치를 확대하고, 토지와 배당을 환류대상 항목에서 제외함.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임금 지급과 동등하게 기업 사내유보금의 환류 방식으로서 권장되었으나, 배당금 대부분이 일부 대주주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가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배당 위주로 치우친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2017년에는 배당금의 환류 인정비율을 50%로 축소하였고,²⁾ 2018년부터는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환류대상에서 배당금 전액을 제외시켰음.³⁾

2022년 세법개정에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2025년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주요연혁]

시행시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주요연혁
2015년	○ 2015년 제도 신설: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인세법」 제56조) ○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제외),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A, B 중 선택 - A: $[\text{기업소득} \times \textcircled{A}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 + \text{상생})] \times 10\%$ - B: $[\text{기업소득} \times \textcircled{B}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 + \text{상생})] \times 10\%$ ※ $60\% \leq \textcircled{A} \leq 80\%$, $20\% \leq \textcircled{B} \leq 40\%$로 세부기준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textcircled{A}=80\%$, $\textcircled{B}=30\%$ ○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
2017년	○ 배당액 인정비율을 50%로 하향,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시 각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50% 가산

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6. 11.

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11.

시행시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주요연혁
2018년	○ 세제명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미환류소득 산출을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㉔,㉕을 하향조정(㉔: 65%, ㉕: 15%)하고,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투자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 제외, 배당 삭제, 고용증가시 임금증가 금액 가중치 상향, 상생협력에 대한 가중치 3배 적용 ○ 적용기한 연장: 2020년 12월 31일
2020년	○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 투자포함형의 당기소득 비율 상향조정(65%→70%) ○ 임금증가 대상범위액 인상(7,000만원→8,000만원)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연장(1년→2년) ○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
2023년	○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 (자본금 500억원 초과기업 제외) ○ 적용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

조세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신고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액은 978개 법인이 총 8,544억원을 부담하였으며, 2022년에 신고된 법인세액은 1,580개 법인이 총 1조 3,339억원을 부담하여 납부기업 수와 납부세액 모두 증가하였음.

그런데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축소되면서 납부기업은 877개로, 납부세액은 5,81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995개 기업이 9,121억원을 납부하였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연도별 납부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납부기업 수	978	1,325	1,535	1,580	877	995
납부세액	8,544	10,658	11,857	13,339	5,818	9,12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금 추가

□ 박수민의원안과 정부안은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박수민의원안은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의 배당을 장려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2019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으로 개인 주식투자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는 611만 6,481명이었던 상장법인의 개인소유자가 2024년에는 1,409만 8,359명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소유주식 수도 2019년 441억 6,700만주에서 579억 6,700만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결산 상장법인 개인소유자 현황]

(단위: 명, %, 백만주, 종목, 주)

구 분	소유자수	비율	소유주식수	비율	평균소유 종목	평균소유 주식
2019년	6,116,481	98.9	44,167	46.8	4.19	7,221
2020년	9,107,228	99.1	49,672	50.2	5.23	5,454
2021년	13,736,703	99.2	54,369	50.7	5.9	3,958
2022년	14,241,206	98.8	56,110	50.7	5.86	3,940
2023년	14,034,097	99.1	57,544	50.7	5.97	4,100
2024년	14,098,359	99.1	57,967	49.6	5.79	4,112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가계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배당을 환류대상
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둘째, 내국법인의 배당성향을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하고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자본조달비
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value Ratio,
PBR)⁴⁾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상으로, 다른 주요
국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PBR은 1.05였고, 이전 10년 평균 PBR은 1.04였음.
2023년 이전 10년 평균 PBR은 신흥국 평균은 1.58이고, 선진국 평
균은 2.50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임. 또한, 한국거래소에 따
르면 코스피 PBR은 2024년 기준 0.9를 기록하였음.

[주요국 PBR 현황]

구 분		신흥 평균					선진 평균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영국	
PBR	2023년 말	1.05	2.41	1.13	3.73	1.61	4.55	1.42	1.71	3.10
	10년 평균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그런데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4)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PBR이 높을수록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주주환원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낮은 주주환원 수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있었음.⁵⁾

우리나라 배당성향⁶⁾은 최근 10년 평균 26.0%로, 신흥국 평균(39.6%)과 선진국 평균(49.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데,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 제고 및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유인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소득이 대주주에게 주로 환류되고,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하려는 제도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2023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804개의 최대주주 지분 평균은 31.76%였고⁷⁾,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상장기업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2025년 9월 기준 34.4%에 달함.⁸⁾

둘째,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가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통한 환류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5) 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2023. 5.

6)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임.

7)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2024. 10.

8) 출처: 기획재정부(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외국인보유량 추이를 가공)

현행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기업소득이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음.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임금증가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에 기여하여 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음.

반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보유 주식의 많은 주주일수록 배당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가 배당을 통한 환류로 대체되어 자산가 집단에 주된 혜택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본 조세특례 도입 당시에는 환류대상에 배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두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배당을 제외하였던 제도의 연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임금 지급과 동등하게 기업 사내유보금의 환류 방식으로서 권장되었으나, 배당금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 일반 국민의 소득을 증진하거나 우리 경제로의 환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배당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이후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유보금이 직접적인 투자, 고

용 및 상생협력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을 차감항목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음.

넷째, 박수민의원안은 환류대상을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주 비중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등배당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을 환류대상에 추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분만 제외하는 것은 외국인 주주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 과세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부안은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면서 환류대상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100조의32제2항은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투자포함형의 경우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투자제외형의 경우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5항에서 투자포함형은 100분의 70으로, 투자제외형은 100분의 15로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⁹⁾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개정안은 투자포함형의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투자제외형은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구간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규정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본 제도는 조세감면이 아닌 조세중과(重課) 특례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침익적 조치에 해당하는 바, 환류소득 비율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여섯째, 정부안은 조 제목을 현행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바꾸면서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법 제132조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¹⁰⁾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 다.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 또는 203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이 투자 및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환류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됨.

기업이 투자 등을 통해 소득을 환류하지 않으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 등을 늘릴 유인이 있음.

사내유보금은 통상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24년 대기업¹¹⁾의 사내유보금은 2,123조 4,620억원으로 2017년 대비 788조 570억원 증가하였음.

[연도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변동 추이]

(단위: 십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본잉여금(A)	369,166	392,228	390,155	435,341	513,759	593,916	617,413	626,448
이익잉여금(B)	966,438	1,041,083	1,046,733	1,064,265	1,220,216	1,308,704	1,355,228	1,497,014
합계(A+B)	1,335,603	1,433,311	1,436,888	1,499,605	1,733,975	1,902,620	1,972,642	2,123,462

자료: 한국은행

11)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업 중 아래 업체들을 제외한 비금융 영리기업을 포함함.

- ① 결산월 1~5월 업체
- ② 공공부문 중 비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및 금융공기업 등 비영리법인
- ③ 임업, 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단체,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 활동 등 제외업종 영위업체
- ④ 비사업지주회사
- ⑤ 매출액 또는 자산이 (-)인 업체

이와 같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창출한 소득이 투자 및 임금증가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충분하게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환류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제도에 따른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의 확대 효과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전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포함형 신고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된 바 있음.¹²⁾

반면, 2020년에 수행된 동 제도에 대한 KDI의 조세특례 심층평가¹³⁾에 따르면 정책대상자의 투자가 비정책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투자포함형 신고방식을 선택한 제조업 영위 기업들뿐이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투자 증가 효과가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음.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유의한 감소 효과가 관측되었음.

임금증가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동 제도가 정책대상 기업들의 임금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투자포함형을 선택한 비제조

12) 이용주·윤태화, ‘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8.12.

13) KDI,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0 9.

업 영위 기업들의 임금은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상생협력의 경우에도 유의한 긍정적 정책효과가 관측되지 못했음.

동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소득을 사외로 충분히 유출시켜 미환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인데, 미환류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도 증가하고 있어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¹⁴⁾

둘째, 투자 등을 통한 기업소득 환류의 적정수준은 기업이 직면한 경영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 제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설정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문 의 처
02)6788-5154

14) 단, 2023년 신고분의 경우 신고기업 대비 납부기업 비중과 납부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기업 소득금액 감소에 기인함.

15) 김빛마로, ‘현안분석: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